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3. 27.(화) / 총 6매(본문3)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손덕환, 서기관 이경재, 사무관 최은지 • ☎ (044) 201-3669, 3664, 3670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우리 지역 발전기회, “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”

투자선도지구·지역수요 맞춤형지원·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5월 중 공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‘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’을 추진한다.
-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, ②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,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,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, 응모할 수 있다.

《 ① 투자선도지구 공모 》

- 투자선도지구는 ‘지역개발지원법’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,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.
-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*에 적용되는 ‘발전촉진형’과 그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‘거점육성형’으로 구분되며, 유형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·부담금 감면,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.

* 낙후지역(지역개발지원법 제2조): 균특법(제2조)에 따른 성장촉진지역(생활환경 등이 저조한 70개 시·군) 및 특수상황지역(접경 지역 및 도서지역)

< 투자선도지구 주요 혜택 >

구 분	발전 촉진형 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	거점 육성형 (그 외 지역)
혜 택	재정지원 (성장촉진지역에 한정, 도로 등 기반시설 100억 원 이내)	-
	조세감면 (법인세, 소득세 등) 부담금감면 (농지보전부담금 등)	-
	규제 특례 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개)	
	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 지원 등	

- 특히,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·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.(발촉형·거점형 모두 지원 가능)
- 또한,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.

《 ②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 》

-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,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·복합 사업을 지원하여,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.
- 시·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'17년부터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광역적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복수의 시·군이 함께 신청하는 지역연계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.
-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·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, 복수의 시·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.

○ 또한,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,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기획한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.

- 이와 함께,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*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**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.

* 성장촉진지역(70개 시·군) 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% 22개 시·군(시도자율선정)

** 고령자 공동생활공간, 고령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

《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공모 》

○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로,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·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 금융자원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.

□ 2018년 공모사업은 5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,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(서면→현장→발표)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된다.

구 분	투자선도지구	지역수요맞춤지원	지역개발금융
접수기간	5월 4일(금)	5월 24일(금)	5월 11일(금)
선정 수	5개 사업 내외	18개 사업 내외	3개 사례 내외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·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,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경재 서기관(☎ 044-201-3664) 또는 최은지 사무관(☎ 044-201-36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□ **제도 개요**

-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,
 - '15.1.1. 신규 시행된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입
- 민간투자·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모·선정하여
 -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,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/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新 성장거점으로 육성

□ **적용대상 및 유형**

- (적용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*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
 - 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사업 등
- (유 형) 지역별·사업 내용별로 4개 유형으로 구분

구 분	발전촉진형 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	거점육성형 (그 외 지역)
일반형	유형1	유형2
혁신도시연계형	유형3	유형4

* 기존 KTX 거점육성형은 일반형(유형1, 2)에 포함

□ **(주요 인센티브)** 해당 지역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,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

구 분	발전촉진형	거점육성형
혜 택	재정지원 (성장촉진지역에 한정, 도로 등 기반시설 100억원 이내)	-
	조세감면 (법인세, 소득세 등) 부담금감면 (농지보전부담금 등)	-
	규제 특례 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개)	
	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 지원 등	

□ **추진 배경**

-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존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,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/W+S/W 융·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

□ **주요 내용**

- (지원대상) 성장촉진지역*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
 - 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한 시·군('14년 재지정)
- (지원사업) 기반시설(H/W)과 문화 콘텐츠 등 S/W(타부처 사업 연계가능) 융·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
 - * 사업예시 : 지역일자리, 지역생활복지, 지역관광·체험 등

- 공모시 ① 단일 시·군 사업과 ② 복수 시·군 연계 사업(지역개발 연계사업)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

구 분	단일 시·군 사업	지역개발 연계사업
대상 지자체	·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 대상('14년 재지정 기준)	· 성장촉진지역을 포함한 복수(2개 이상)의 시·군 대상(최대4개)
지원 규모	· 최대 약 20억원(보조율 100%)	· 약 30억원 내외(보조율 100%) - 연계 지자체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
사업수	· 약 10개 내외	· 약 3개 내외

- 지자체와 지역 내 주민공동체(주민·전문가·문화예술인 등)가 공동 기획한 사업도 응모 가능(지역 거버넌스형 사업, '18년 신규도입)
- 지역활성화지역*의 경우 공모유형 추가(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),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(단일 시·군사업과 별도로 5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)
- * 성장촉진지역 시군(70개)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% 22개 시·군(시도자율선정)

- (사업규모·보조율) 단일 시·군 사업은 최대 약 20억원, 복수 시·군 사업은 최대 약 30억원 지원(보조율 100%)

□ (공모 절차) 접수 → 서면평가 → 현장평가 → 발표평가 → 선정

□ **추진배경**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국비, 지방비,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자금 활용
 -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중 상당한 부분이 민간투자로 구성
 - 또한, 대부분 핵심시설(관광시설·산업단지 등)은 민간, 기반시설(도로·상하수도 등)은 공공에서 지원해 민자유치 여부가 사업 성공에 결정적
- 정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민간 자본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 -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수익률을 확보가 어려움
 - 반면,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의 대규모 유동자금, 사회적 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 가능성도 있음

□ **주요내용**

- (공모대상) 모든 지역 대상 지역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재원을 마련한 사례 또는 민간자원 유치를 위한 제도

< 예 시 >

- ① 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, 리츠, 부동산펀드,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(추진 중인 사례)
- ②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자원마련을 위하여 신용보증, 이차보전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지원 제도
- ③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제3섹터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/ 이러한 업무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.정책
- ④ 임팩트투자, 기부금, 사회적 크라우드펀딩 등 사회적금융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례
- ⑤ 리츠,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직접적 수익이 국민, 조합원 등에게 환원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례 등

- (추진일정) '18.5.11(제출) → '18.5(평가) → '18.6(결과통보 및 홍보)